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25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서왕진·김준형·조 국

조인철 · 김재원 · 이해민

강경숙・박은정・차규근

김성환 · 김선민 · 신장식

황운하 • 민병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정부의 출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후대 응보증사업'을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출연하여 탄 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그런데 '기후대응보증사업'은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편성되었고,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의 경우 정부 출연금의 예산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되도록 근거 규정 을 신설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7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정하는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②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			
부 소관으로 한다. <단서 신			
<u>설></u>	조제1항제7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은 해		
	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제23조(업무) 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		
	하도록 정하는 업무		
<u>7.</u> 제1호부터 <u>제6호</u> 까지의 업무	<u>8.</u> <u>제7호</u>		
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